

의안번호	제255호
의결연월일	2024. 3. 13.

- 예산군 아동·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4. 이정순 의원 외 2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3. 5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4. 3. 13.

제29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대표발의자 : 이정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정신적,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- 지원대상(안 제5조)
- 지원내용(안 제6조)
- 지원신청(안 제7조)
- 비밀준수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 등(안 제9조)
- 정보제공 및 홍보 등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이 부모 및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